

#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.

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」에  
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는

- 지금까지 늘봄학교 간식비 지원이 교육청의 직접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 규정이 없이 정책적으로만 진행되었기에 늘봄학교 간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간식비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늘봄학교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늘봄학교 간식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,
- 간식 관리 및 운영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